

제 1241 호
1986. 1. 2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
편집인 : 공보관 이광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제	보도계장	공보계장	공보관	공
	1241	1986. 1. 29	1241	월 일 람

시 보

차례

◎ 조례

제 2067 호 : 서울특별시도로수익 자부담금징수조례증 개정조례 3

◎ 규칙

제 2130 호 : 서울특별시도로수익 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증 개정규칙 4

◎ 고시

제 60 호 :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 4

제 61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 5

제 62 호 : 도시계획사업(하수도)실시계획인가 13

(이면계속)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공 고

제 50 호 :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 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 13

◎ 사 령

조 레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. 1. 29.
서울특별시장 염보현(○)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67 호

**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
징수조례중 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 중 "도로계획법 제 65 조"를 삭제한다.

제 2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중 "폭 20 미터미만"을 "폭 30미터이하"로 하고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공사 시행 공고일로부터 부과시의 토지 가액 조사원료 기간까지의 도매율 가상승율과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가액을 승한 금액을 말한다.

제 4조 중 "3분의 1"을 "4분의 1"로 "4분의 1"을 "5분의 1"로 한다.

제 5조 제 1항 제 1호 중 "3배"를 "1

배"로 하고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기존도로에 접한 하천을 복개한 때에는 복개된 측은 제 1호에 의하고 기존도로측은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부과구역으로 한다.

제 5조 제 3항 제 1호 및 제 3호 중 "3배"를 "1배"로, 제 2호 중 "20미터이상"을 "30미터초과"로 하고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도로의 측면만을 확장한 때에는 확장된 측은 제 1호에 의하고 기존도로측은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부과구역으로 한다.

제 8조 제 2항 중 "4구역"을 "2구역"으로 하고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 3호 및 제 4호를 삭제한다.

2. 도로양측 경계선으로부터 부과구역 중 제 1호의 토지를 제외한 구역

제 11조 중 제 4호를 삭제한다.

제 17조의 2 제 1항 중 "(출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와 제 4항 중 "(출장소장)"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- 1)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)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보 1986. 1. 29.

규 칙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6. 1. 29.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⑨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130호

**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
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**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조(구역별 부과비율) 부담금의 구역별 부과비율은 다음과 같다.

1. 조례 제 8조 제 2항의 부과구역에 부과총액의 100분의 70.

2. 조례 제 8조 제 2항 제 1호의 구역은 제 1호의 부과비율의 부과총액의 100분의 30을 가산

제 4조 중 “전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별 배분액”을 “제 3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액”으로하고 제 2항 중 “100분의 25”를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 5조 제 1항제 1호중 “(출장소포함, 이하 같다.)”를 삭제하고 제 2호중 “전호”를 “제 1호”로, 제 2항중 “국

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34조의 규정”을 “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 7조 제 1호 나목중 “조례 제 8조 제 2항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구역”을 “조례 제 8조 제 2항의 부과구역”으로하고 제 4호중 “도로의 한편만을 확장한 경우”를 “도로의 한편만을 확장(기존도로에 접한 하천복개포함)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- 1)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)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 이전에 이미 부과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호

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고시

1.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를 위해 당시 공고 제 758호 ('85.12.19)로 서류⁽¹⁾ 공람 공고한 가스공급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제 1241 호 시

보 1986. 1. 29. 14-5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와 사업시행지 관할구청 도시 경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	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1986. 1. 29. 서울특별시장
--	--

가. 사업시행지

구 분	강 남	동 부	북 부
위 치	강남구 대치동 27-1	성동구 군자동 205-206	도봉구 삼계동 711 번지, 712 번지의 3
비 고	서울시고시제 41호 (78.2.11)로 도시 계획시설(가스공급설 비) 결정. 서울시고시 제 141호 (78.4.7) 지적승인	서울시 고시 제 48호 (82.2.3)로 도시계획 시설(가스공급설비) 결 정 및 지적수인	서울시 고시 제 211호 (84.4.23)로 도시계획 시설(가스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

(가스공급설비)

다. 사업시행자 : 한국가스공사

대 표 문 회 성

라. 시행면적

- (1) 강남 : 2,402 m² (건축연면적 325.45 m²)
- (2) 동부 : 1,937.3 m² (건축연면적 281.45 m²)
- (3) 북부 : 1,092 m² (건축연면적 121.45 m²)

마. 시행기간 : 허가일 - '86.12.31

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생략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 성
명 및 주소 : 별첨아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
건물의 조서, 자번 및 지목과 소

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별첨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1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시고시 제 386호(64.9.30)로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적승
인된 성동구 마장동 450-65 일대의
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에 대하여
도시계획법 제 25조와 제 26조 및 같
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
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
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록과에 비
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게 보인다.

1986. 1. 29.

서울특별시장

14-6 제 1241 호 시

보 1986.1.29.

1) 사업시행지 : 성동구 마장동 450-65 번지 일대	4) 사업시행자주소 :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
2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명칭 : 동명국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	성명 : 서울특별시장
3) 사업의 규모 : B=6~8M L=630M	5) 사업의 착수 : 1985.12.26. 준공 예정 : 1986.7.23. 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○ 토 지

지번	지목	지적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성동구 마장동 450-65	도		

○ 전 불

소재지	면적(m ²)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성동구 마장동 450-65 (568-9)	7.3	
" (568-10)	6.4	
" (569-1)	1.0	
" "	1.2	
" (569-1)	3.9	
" "	6.8	
" (569-2)	2.6	
" "	6.2	
" (560)	4.1	
" (569-2)	20.2	
" (573-2)	30	
" (573-1)	4.8	
" (574)	27.7	
" (573-1)	4.0	
" (574)	0.3	
" (566-1)	45.0	
" (566-45)	9.0	
" (566-44)	16.8	
" (566-37)	41.0	

제 1241 호 시

보 1986.1.29. 14-7

소 재 지	면 적 (m ²)	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
성동구 마장동 450-65 (497-12)	1.2	
" (497- 9)	4.1	
" (497- 7)	9.6	
" (497- 1)	11.6	근저당, 도선동 새마을금고
" (479-32)	5.4	근저당, 국민은행

○ 무허가건물

소 재 지	면 적 (m ²)	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
성동구 마장동 450-65 (568-11)	54.0	
" (569- 2)	21.7	
" "	39	
" "	23	
" (560)	15.4	
" "	26.0	
" (573-2)	37.0	
" (")	35	
" "	42	
" "	38	
" "	10.6	
" (574)	192	
" "	38	
" "	31	
" (573-1)	14.3	
" (574)	16.7	
" "	10.4	
" (566-1)	14.6	
" (566-46)	22.4	
" (566-43)	29	
" (565)	23.5	
" (566-42)	15.4	

14-8 제 1241호 시

보 1986.1.29.

소 재 지	면 적 (m)	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
성동구 마장동 450-65 (566-41)	10.4	
" (565)	18.7	
" "	17.4	
" "	39	
" "	23.3	
" (497-12)	16.6	
" "	20	
" (497-12)	21.1	
" "	59	
" (497-13)	25.8	
" (533- 4)	12.6	
" (497-13)	21.6	
" (533- 3)	10.3	
" (497-13)	2.6	
" "	7.8	
" "	5.8	
" (497-12)	8.4	
" "	26.1	
" "	10.6	
" (497-12)	18.7	
" (497- 1)	26.0	
" "	14.7	
" (497-32)	0.8	
" (479-30)	47	
" "	8.0	

○ 시공선 보상 (토지)

소 재 지	면 적 (m)	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
성동구 마장동 568-11	75	
" 568-10	50	
" 568- 9	100	
" 568- 2	75	
" 565	400	

제 1241 호

시

보 1986.1.29. 14-9

○ 시공선 보상(건물)

소재지	면적 (m ²)	소유권이 외의 권리명세
성동구 마장동 568-11	70	
" 568-10	30	
" 568-9	45	
" 569-2	35	
" "	30	
" 565	9	
" "	6	
" "	16	
" "	12	
" "	8	
" "	40	
" "	20	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○ 건물
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4조 제3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 (568-9)	마장동 568-9	이순호
" (568-9)	" 4	권승호
" (569-1)	" 569-1	권구선
" "	"	김원규
" "	"	이주자
" "	"	김두하
" (569-2)	" 569-2	이강운
" "	"	김춘현
" (560)	" 560	백사기
" (569-2)	" 569-2	강선규
" (573-2)	" 573-2	윤성주
" (573-1)	" 573-1	김홍권
" (574)	" 574	김재욱

14-10 제 1421 호 시

보 1986.1.29

소 재 지	소 유 자	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 (573-1)	마장동 573-1	최성길
" (574)	" 574	김재준
" (566-1)	종로 원남동 51-1	강영혜
" (566-45)	마장동 566-45	김영부
" (566-44)	하왕 982-7	박방춘
" (566-37)	마장동 566-37	유한웅
" (497-12)	" 497-12	김광구
" (497-9)	" 497-9	선병호
" (497-7)	홍익동 562	이양호
" (497-1)	" 23	권옥선
" (497-32)	" 479-32	조병승

○ 토 지

소 재 지	소 유 자	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	서울특별시	

○ 무허가 건물

소 재 지	소 유 자	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 (568-11)	마장 568-11	안금선
" (569-2)	569-2	김종운
" "	"	김순옥
" "	"	황경언
" (560)	" 560	백사기
" "	"	백사기
" (573-2)	573-2	김무웅
" "	"	심동섭
" "	"	이재복
" "	"	문승본
" "	"	김유성

제 1421 호 시

보 1986.1.29. 14-11

소 재 지	소 유 자	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(574)	마장동 574	김재준
"	"	김재욱
"	"	김재욱
" (573- 1)	" 573-1	심동섭
" (574)	" 574	김재욱
" "	"	홍승표
" (566-1)	" 566-1	강병혜
" (566-46)	" 566-46	이강석
" (566-43)	" 566-43	송한규
" (565)	" 565	박영식
" (566-42)	" 566-42	최승환
" 66-41	" 566-41	문길호
" (565)	" 565	김영식
" "	"	이원주
" "	"	박말분
" "	"	민병엽
" (497-12)	" 497-12	조성현
" (497-12)	마장동 497-12	노주환
" "	"	조성경
" "	"	황정옥
" (497-13)	" 497-13	김주란
" (533- 4)	" "	고경환
" (497-13)	" 497-13	"
" "	"	고경환
" "	"	홍승환
" "	"	홍승환
" (497-13)	" 497-13	박영명
" (497-12)	" -12	"
" "	"	안옹주
" "	"	신양원
" "	"	유동세
" (497-1)	" 497-1	심육보

14-12 제 1241 호 시

보 1986.1.29
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 마장동 450-65(497-1)	마장동 497-1	황정희
" 479-32	" 479-32	조병승
" 479-30	" 479-30	맹우섭
" "	"	유창선

○ 시공선보상(토지)
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 마장동 568-11	마장동 568-10 오순례외 5인	
" 568-10	" 568-10 오순례외 1인	
" 568-9	" 451-5 송기영외 197인	
" 569-2	" 451-5 "	
" 565	" 451-5 "	

○ 시공선보상(건물)
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 마장동 568-11	마장동 468	심혁로
" 568-10	" 568-10	오세원
" 568-9	" 451-5	이재봉
" 569-2	" 569-2	박동수
"	" 451-5	김종남
" 565	" 565	이병규
"	"	최병숙
"	"	최영철
"	"	홍옥례
"	"	조영선외 3
"	"	서우철
"	행당동 303-35	배복진

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토목과(445-8704)로 문의 바람.

제 1241 호 시

보 1986. 1. 29 14-13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62 호

도시계획사업(하수도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시고시 제 256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다음 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낸다.

1986. 1. 2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명 : 방화동 272 의 4-210 의 5
간 하수도공사

나. 사업위치 : 방화동 272 의 4-210
의 5

다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규모) : 도
시계획(하수도)

석축H = 2m L = 1.794m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마. 사업기간 : '85.2.3-'86.2.28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
사. 인가내용 : 별첨인가조서(도서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50 호

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 시행허가
에 따른 서류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644 호 (85. 9. 27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가스공급설비 시설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행 허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람.

1986. 1. 2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

(1) 강남구방배동산 100-3 일대

(2) 구로구독산동 948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
사업(가스공급설비)

다. 사업시행자 : 한국가스공사 대표문의성

14-14 제 1241호 시

보 1986.1.29

라. 시행면적			
위 치	강남구방배동 산 100-3		
규 모	시행면적 : 3,005.5 m ² 건축면적 : 0 m ² (지하 260.6 m ²)		
구로구독산동 948 일대	시행면적 : 3,975.7 m ² 건축면적 : 0 m ² (지하 536.6 m ²)		
<p>마. 시행기간 : 허가일 - '86.12.31</p> <p>바. 기타 :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연</p>			
[료과 (전화 731-6316(9))에 문의 또는 서면 바람.]			
사 령			
◎ 1986년 1월 29일		형 제 33호	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성식	충무처소청심사위원회 결정 (85-280호) 에 따라 '85.10.19자 감봉 1월 처 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	강서구보건소장	지방의사
노종식	재법원판결 (85누 738호)에 따라 '84.11.28자 감봉 1월 처분을 동일 자로 취소함.	청소과 위생설비계장	자발화공기과
서 울 특 별 시 장			